

출퇴근 재해 이렇게 예방합시다

2018. 1. 1.부터

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도 산업재해로 인정이 됩니다.

출퇴근 재해란?



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또는 업무를 마침에 따라 이루어지는
출퇴근 행위 중 이동경로상에서 발생한 재해

대중교통, 자가용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통상적인 경로로의 출퇴근으로
공사, 시위, 집회 등으로 인한 도로사정에 따라 우회하는 경로도 포함

▶ 단, 「일상생활용품의 구입, 직무관련 교육·훈련 수강, 선거권행사, 아동 등·하교, 진료, 가족간병」 등
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에 의한 통상적인 경로의 이탈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됨.

교통수단별 주요 재해발생 유형



지하철

- ▶ 에스컬레이터에서 뛰거나 걷다가 발이 끼이거나 걸려 넘어짐
- ▶ 역사 내 계단 등에서 뛰거나 걷다가 넘어짐
- ▶ 무리한 탑승을 하려다 승강기도어 또는 스크린도어에 끼임
- ▶ 역사 내 도보 이동 시 휴대폰 시청으로 전방주시 소홀에 따른 부딪힘, 넘어짐



버스

- ▶ 버스 승·하차시, 급출발 또는 급정지에 따른 넘어짐
- ▶ 손잡이를 잡지 않아 버스 운행 중 넘어짐
- ▶ 버스 도어 개·폐시 부딪힘, 끼임
- ▶ 버스 하차시 버스 옆으로 달려오던 이륜차와 부딪힘
- ▶ 버스승강장이 아닌 차도로 내려와서 버스를 탑승하려다 버스에 부딪힘



이륜차

- ▶ 빗길, 눈길, 고르지 못한 노면 등에 의한 미끄러짐 또는 넘어짐
- ▶ 운행 중 휴대폰 사용에 의한 넘어짐
- ▶ 휴대폰을 사용중인 보행자, 골목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차량 등에 부딪힘
- ▶ 신호를 위반하여 운행 중 교통사고

※ 승차용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 필수



도보

- ▶ 도보 이동 시 휴대폰 시청에 따른 넘어짐 또는 부딪힘
- ▶ 빗길, 눈길, 고르지 못한 노면 등에 의한 미끄러짐 또는 넘어짐
- ▶ 이어폰 착용에 따른 주변 경고음 미인지로 다른 보행자나 차량 등과 부딪힘
- ▶ 무단횡단 등 신호위반에 따른 교통사고



출퇴근 재해 이렇게 예방합시다

출퇴근 재해란?



출근길 버스 탑승을 위해 달려가던 중 보도블럭 턱에 걸려 넘어짐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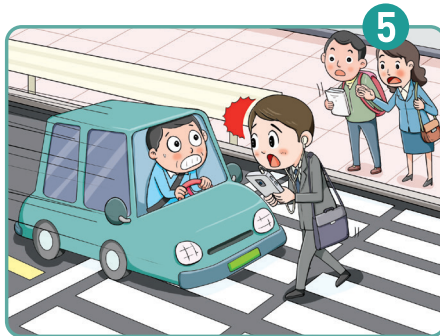
자전거를 타고 회사로 출근하던 중 골목에서 갑자기 진입하는 차량과 부딪힘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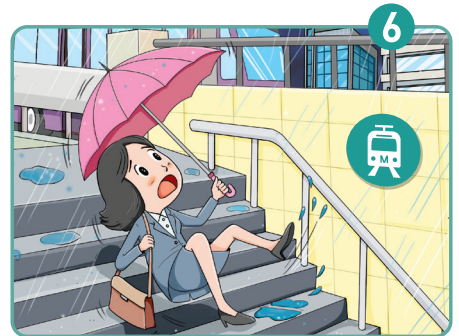
버스 손잡이를 잡지 않고 휴대폰을 시청하던 중 버스가 급정거하여 넘어짐



야근 후 집으로 퇴근하는 길에 주변이 어두워 돌뿌리에 걸려 넘어짐



휴대전화를 보면서 출근하던 중 길을 건너다 차량과 부딪힘



비오는 날 지하철 역사 내 계단 이동 중 미끄러져 넘어짐

출퇴근재해 관련 Q&A

Q 통상의 출퇴근재해는 언제부터 산재보상이 되나요?

A 2018. 1. 1. 이후 발생한 출퇴근 사고부터 산재보상이 됩니다.
(2017. 12. 31. 이전 발생한 사고는 사업주 지배 관리하에서 발생한 출퇴근재해만 인정)

Q 이동수단의 제한은 없나요?

A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교통수단을 합리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라면 이동수단의 제한은 없습니다.
(대중교통, 승용차, 오토바이, 자전거, 도보 등)

Q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는 모두 산재보상이 되나요?

A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 없이 이동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산재보상이 됩니다.
(예: 걸어서 퇴근하다가 넘어진 경우, 자가용으로 출근하다가 교통사고가 난 경우 등)

Q 출퇴근 경로를 일탈하거나 중단하면 모두 산재보상이 안되나요?

A 아닙니다.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시행령으로 정한 경우에 해당하면 산재로 인정됩니다.

Q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어떤 것이 있나요?

A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 구입,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교육이나 훈련, 선거권 행사, 아동위탁, 병원진료 또는 가족간병 등이 있습니다.

Q 산업재해 인정여부 문의는 어디에 해야하나요?

A 근로복지공단 ☎ 1588-0075로 하시면 됩니다.